

대한제국기의 호구정책*

— 丹城 培養里와 濟州 德修里의 사례

孫炳圭**

- | | |
|----------------------------------|----------------------------|
| I. 머리말 | III. 19세기말~광무시기의 호구정책 —전국과 |
| II. 광무시기의 호구과약 — 慶尙道 丹城郡 培養里의 사례 | 濟州 德修里 사례의 비교 |
| | IV. 맺음말 — 대한제국기 호구정책의 성격 |

• 국문요약

조선시대의 각종 부세를 토지세와 戶稅로 단일화하는 재정개혁의 일환으로 대한제국이 성립하기 직전인 1896년에 새로운 호구과약 방법이 공표되었다. 여기에는 가능한 한 많은 호세 대상을 파악하고자하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었으나 통감부시기에 들어서기 전까지 전국적인 호수는 증가하지 않았다.

1896년의 호구과약 방법은 종래의 호적작성 방법과 다를 뿐 아니라, 종래의 호구정책과 다른 이념 하에서 제시되었다. 기존의 호적은 지역단위로 설정된 호구수가 바로 호구에 대한 그 지역의 정세 총량을 나타낸다는 재정이념에 입각하고 있었다. 따라서 기존의 호적은 지역단위의 호수 및 인구수, 職役數에 맞추어 지역내부에서 호구의 등재와 누락을 조정하고 호의 구조를 편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소위 ‘光武戶籍’은 실재하는 모든 세대의 파악을 전제로 호마다 각기 다른 경제능력을 별도로 파악함으로써 이러한 기존의 원칙을 공식적으로 부정하였다.

* 이 논문은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2002-005-A20001).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연구교수.

그러나 광무시기 호구파악은 모든 세대를 파악하지도 않고 경제능력이 상위인 호들만을 파악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호구파악을 계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에서 조사되는 호와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호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 따라서 戶稅 부과에 대응하여 별도로 호를 파악하거나 지역단위의 호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었다. 단지 호를 편제하는 현실적인 방법과 그것을 조정하는 주체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했다. 원칙적으로 호구파악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호구파악에서 호구수취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종래와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의 자치적 활동에 호구파악 과정의 수행을 맡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갑오개혁은 중앙정부가 모든 재원을 일률적으로 파악하고 징수하여 일원적으로 배분하는 중앙집권적 재정이념을 현실화하는 데에 목표가 있었다. 이러한 중앙집권적 재정은 바로 조선왕조가 지향해왔던 재정이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왕조는 지방재정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중앙과 지방, 지방과 지방의 재정관계를 조정하는 수준에서 중앙집권적 재정을 유지하였다. 대한제국기의 호구정책은 갑오개혁의 의지를 계승하면서도 지방사회의 자율적 운영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며, 여기에 호구정책상의 갈등이 존재했다.

· 키워드

대한제국기, 호구정책, 광무호적, 호세, 재정이념

I. 머리말

갑오개혁기에 조선의 통치, 재정이념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호구정책의 개혁이 시도되고 그 실현은 대한제국의 과제가 되었다. 대한제국이 성립하기 직전인 1896년 9월에 ‘戶口調査規則’과 ‘細則’이 공포되었던 것이다.¹⁾ 실재하는 모든 세대를 ‘戶’로 파악하고 호의 대표자를 명기하는 것이 새롭게 제시된 호구과약 방법의 골자였다. 이것은 가능한 한 많은 호를 확보함과 동시에 호세 부담자를 법제적으로 확정함으로써 조선시대의 각종 부세를 전세와 호세로 단일화하는 재정개혁을 현실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포하고 있었다.

그러나 대한제국기에 들어서 중앙정부가 파악한 전국의 호수는 이전보다 오히려 감소하였다. ‘管稅官官制’를 제정하여²⁾ 국가재원의 근거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고자 한 1906년을 전후로 호수가 급증하는 현상을 보일 때까지 대한제국의 중앙정부는 호세를 부과할 대상이 그다지 확보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러면 1896년에 공포된 호구과약 방법은 이후 10년간 전혀 실현되지 못했으며 종래의 호구과약과 구별되는 어떠한 의미도 부여할 수 없는 것인가?

조석곤은 대한제국기의 호정을 호세와의 관계에 주목하여 해명한 바 있다.³⁾ 그는 호적 파악의 실질적 내용은 갑오개혁에 의한 신분제 철폐, 그에 따른 호적양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의 그것과 크게 구별되지 않는 것으로 이해한다. 조선시대의 호가 ‘생활공동체’의 ‘경제단위’로서 파악되고 이러한 호의 파악이 광무시기 호정에 관철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단지 호세수취를 위한 과세호수의 급증, 실지조사에 입각하지 않은 호구조사의 불평등성이 이 시기 호적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

또한 이세영은 갑오개혁 이후의 호구과약이 조선시대의 호구과약에서 누

1) 建陽 元年(1896) 9월 1일에 勅令 第61號로 戶口調査規則이 발령되었으며 『官報』 건양 원년 9월 1일), 戶口調査細則은 그해 9월3일에 반포되었다(『官報』 건양원년9월8일,

2) 『官報』, 광무 10년 9월 28일

3) 조석곤, 「광무년간의 호정운영체계에 관한 소고」,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1990.

락되었던 호들까지 포함한 '실재호'로 파악되었음을 밝혔다.⁴⁾ 대한제국기에는 이전의 호층에 준하여 호세를 부과할 수밖에 없었으나, 담세능력이 없는 이러한 호에도 점차 호세가 부과되어갔다는 것이다. 여기서는 조선시대의 호적이 균역부과대상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실재하는 모든 세대를 파악하지 않아 누락된 호가 많음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호적에는 담세능력이 있는 호구만이 기재되며, 거기에 호구수가 양적으로 증가하면 실제의 경제단위로 존재하는 '실재호'가 되는 듯이 이해하고 있다.

한편, 조선시대 호적의 호가 실제의 경제단위라고 하는 인식을 부정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⁵⁾ 이 문제는 호의 현실성에 대한 찬반을 넘어서서 호구정책의 이념과 관련된 매우 추상적 수준의 검토를 요구하는 것이기도 하다. 호구의 파악이 실재하는 경제단위를 파악하는 것이라면, 철저한 실지조사를 통하여 그것을 실현할 수도 있으며 그러한 실제 조사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호구파악은 인구 개개인을 법제적으로 등록하는 통감부시기 이후의 민적법과 다른 원리에 서서 운영되었다고 여겨진다.⁶⁾ 갑오개혁과 광무개혁으로 이어지는 시기의 호구조사가 그러한 조선시대의 호구파악과 민적법의 인구파악 사이에 어떻게 위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검토의 여지가 남아 있다고 본다.

여기서 먼저 대한제국기 호구조사의 실태를 경상도 단성군의 사례를 통해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1896년에 제시된 새로운 호구조사 방법의 적용 여부, 기존 호구파악과의 관련성을 재검토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제주 대정현의 사례를 통하여 대한제국 성립을 전후로 한 지방의 호구총수 변화를 살펴본다. 호구총수의 책정이 전국 일반적인 현상과 달리 지방사회에서 다양하게 진행된 현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대한제국기의 호구파악 실태는 조선왕조의 재정에서 식민지재정으로의 전환과정을 설명하는 주요한 단서가 된다.

4) 이세영, 「대한제국기의 호구변동과 계급구조」, 『역사와 현실』 7, 한국역사연구회, 1992.
 5) 정진영, 「조선후기 호적 호의 편제와 성격」, 『대동문화연구』 40, 2002; 「조선후기 호적' 호의 새로운 이해와 그 전망」, 『대동문화연구』 42, 2003; 김건태 「조선후기 호의 구조와 호정운영」, 『대동문화연구』 40, 2002.
 6) 李英美, 「韓國近代戶籍關聯法規の制定及び改正過程 — 民籍法を中心に」, 『東洋文化研究』 6, 日本學習院大學東洋文化研究所, 2004.

Ⅱ. 광무시기의 호구 파악 — 慶尙道 丹城郡 培養里의 사례

1. 호구 파악의 형식

경상도 단성군에 1904년, 1905년에 작성된 戶籍表, 즉 광무호적의 단편이 남아있다.⁷⁾ 단성현의 광무호적은 南面 元堂里 培養洞의 것으로 1904년 2월자로 작성된 30장과 1905년 2월에 작성된 28장이 한데 묶여 있다. 호구조사세칙에서 발표된 신호적 양식에 따라 한 호에 한 장식으로 기재되었으니, 배양리에는 1904년과 1905년에 각각 30호, 28호의 광무호적이 남아있는 셈이다. 호적표는 매호마다 한 장씩 작성되고 말미에 군수의 직인을 찍었으니, 기존의 戶口單子나 准戶口 양식을 계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광무호적의 호번 양식은 호적표마다 '慶尙南道 丹城郡'이 최상단에 기재되고 하단에 '南面 元堂里 培養洞 第○統 第○戶'의 번지수가 기재되었다. 이전의 '慶尙道 丹城縣 元堂面 培養里'에서 행정구역이 개편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統·戶를 기재하는 것은 기존의 준호구와 마찬가지로이다. 그런데 이와 함께 왼쪽 첫줄에 '戶籍表 第○○號'라고 별도의 호번을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이것은 기존의 호적에 보이지 않는 새로운 기재양식이다. 현존 호적표에는 호번수가 기재되지 않고 있는데, 호적표를 작성한 후에 다른 차원에서 번호를 재조정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여겨진다.

호의 구성도 '戶主'라 하여 호의 대표자를 명기하고 그의 가족을 '同居親屬'으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있다. 기존의 호적에는 첫줄에 등재되는 자를 호의 대표자로 간주하나 그러한 표기가 없어 호의 대표자가 불명확한 것과 대조된다. 그와 관련하여 기존의 호적에는 주호부부 모두에게 父·祖·曾祖·外祖라는 '四祖'가 기재되고 기타 母·婦·孀 등의 혼인관계로 맺어진 자들에게도 부모가 기재되곤 하던 것과 달리 호적표에는 호주 한 사람에게만 사조를 기재할 수 있도록 양식이 짜여져 있다. 또한 호적표에는 호내 구성원 개

7) 「慶尙南道丹城郡 戶籍表」, 『경상도단성현사회자료집』 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개인에게 기재되던 ‘職役’이 사라지고 호주에게만 ‘職業’란을 설정하여 ‘士’ 혹은 ‘農’이라는 신분구분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호내 구성원 가운데 친인척이 아닌 자들은 ‘奇口’라 하여 남녀 인명수만 기재하고 있다.

말하자면 호적표의 ‘호주’는 호와 호의 대표자를 동일시하는 ‘主戶’의 개념으로부터 호의 대표자를 개인적인 것으로 분리시킨 개념이라 할 수 있다.⁸⁾ 반면에 호내 구성원 개개인의 혈연관계와 개별적인 국역 및 신분이 무시되고 호에 대한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호주 개인에게 한정하였다.

또 한 가지 이 호적표가 기존의 호적과 다른 것은 ‘家宅’란을 설정하여 가옥의 소유관계(‘已有’와 ‘借有’)와 가옥의 형태 및 규모(‘瓦’ ‘草’의 間數)를 기재하도록 양식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배양동의 호적표에는 가옥이 모두 호주의 소유로 되어 있다. 호적표에 가옥에 관해 기재하는 것은 호에 대한 호주의 권리가 가옥에 대한 권리를 포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동시에 호적표의 호 구성원이 ‘이러한 규모의 한 가옥에 거주하는 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말한다. ‘가택’란을 광무호적 기재양식에 첨가한 것은 지역내의 호구총수를 맞추기 위해 편제되는 기존의 호구과악과 달리 생활공동체로서의 세대를 호로 파악하고자 한 중앙정부의 의도를 나타낸다.

가옥에 대한 호주의 권리는 호적표 이외에 ‘家舍表’라는 별도의 문서로도 작성되었다. 단성군에는 1905년 8월에 작성된 가사표가 남아있다.⁹⁾ 이것도 역시 배양동의 것으로 광무호적과 같이 한 호에 한 장씩으로 작성되어 모두 40장이다. 이 가사표는 가옥의 統·戶 번지수에 따라 가옥의 형태 및 칸수·가옥의 時價’를 기재한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호주가 아니라 가옥의 소유주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나 단성군 배양동의 경우, 가사표의 호는 두 가지 의미에서 호적표의 호와 동일시될 수 있다.

첫째로 가사표는 침식을 행하는 공간으로서의 가옥만을 기재하나 ‘家舍’란 단순히 건물 하나의 의미가 아니라 호를 구성하는 자들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가사표의 가옥 규모는 여러 건물의 칸수를 통계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반대로 한 호가 여러 가사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

8) 정진영, 「조선후기 호적 ‘호’의 새로운 이해와 그 전망」, 『대동문화연구』 42, 2003.

9) 「丹城郡元堂面家舍表」, 『경상도단성현사회자료집』 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한다. 둘째로 가옥의 소유주가 바로 그 호의 호주가 아니더라도 그 가사에는 호의 대표자인 호주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단성군 배양동의 자료에서 가옥의 소유주와 호주가 다른 경우를 확인하기는 어렵다. 단지 이 가사표에는 호적조사규칙에서 제시한대로 한 통에 10호의 통번을 기재하는데 1통1호로부터 4통 10호까지 빠짐없이 현존하여 1905년 8월 단계에서 배양동에는 40호 이상이 파악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배양동의 가사표에 통호 번지수가 기재된 것에 반해 호적표는 호의 번지수가 기재되지 않고 빈 공간으로 남아 있다. 따라서 1905년의 가사표에서 적어도 40호가 배양동에 존재했다고 한다면, 1904년의 호적표 30장과 1905년의 호적표 28장이 당시 배양동에서 파악된 모든 호의 호수를 가리키는지는 분명치 않다. 김준형의 해설에 따르면 가사표는 집이 앉아 있는 순서대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소위 '신식 家座成冊'이라 할 수 있다고 한다.¹⁰⁾ 말하자면 가사표는 배양동의 모든 호를 망라하여 파악하고 있으며, 그에 반해 호적표는 기존의 호적이 그러했던 것과 같이 그 가운데 일부만을 파악해두는 자료로 보는 것이다.

여기에 1904년 10월에 시행된 '慶尙南道丹城郡家戶案單'(이후 '가호안'이라 약칭함)이 보고용의 책자 형태로 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어 이들 자료와 비교해볼 가치가 있다.¹¹⁾ 이 가호안은 단성군 전체 면리를 망라하여 면리별로 대지의 지번에 따라 대지의 소유주인 '垞主'와 가옥의 소유주인 '家主'를 기록하고 가주에 따라 가옥의 형태와 칸수를 적은 것이다. 또한 畝마다 '已上'조를 두어 이 전체의 戶總과 초가·와가 칸수의 통계가 기재되어 있다. 가호안은 토지대장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가주가 있는 대지만을 대상으로 가주 및 가옥을 병기하므로 가사표와 바로 대조할 수 있다. 가사표와 마찬가지로 당시에 파악된 단성군 각 면리의 가옥을 망라적으로 기재한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가호안을 살펴보면 배양동에는 모두 19명의 가주밖에 파악되지

10) 김준형, 『경상도단성현사회자료집 해설』, 『경상도단성현사회자료집』1,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11) 『慶尙南道丹城郡家戶案單』, 『경상도단성현사회자료집』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않고 있다. 이 수치는 다음해에 작성된 가사표의 가옥 소유자 40 명의 과반수를 넘지 못할 뿐 아니라, 같은 해인 1904년에 작성된 호적표의 호주 30 명에도 미치지 못한다. 가사표와 가호안은 가사의 소유자인 가주를 파악하며, 지번이나 통호번지의 순번에 따라 가주를 기재하는 점에서 공통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렇게 각 자료가 가주의 수를 달리한다는 것은 단지 가호안과 가사표의 작성 시기가 1년간 차이가 있어 그 사이에 더 많은 가주가 발생하였기 때문은 아닌 듯하다.

가호안은 군 전체의 가주 총수를 보고하는 단계에서 호적표의 호구조사와 달리 가주의 파악 정도를 하향 조정하여 보고한 자료이다. 그에 반해 가사표는 호적표의 조사 결과에 상당히 근접한 파악이라는 것이다. 아울러 이들 자료와 상대적인 의미에서 호적표는 군 전체의 호 파악 결과를 보고하기 이전에 현지에서 조사되는 단계의 자료라 할 수 있다.

광무호적은 호구파악에 대한 새로운 방식이 적용됨으로써 기존의 호적과 그 형태를 달리하고 있다. 특히 생활공동체의 가옥을 단위로 호를 인식하며, 호에 대한 개인적인 권리를 법적으로 확정함에 따라 광무호적의 호구파악을 보조하는 새로운 양식의 문서도 작성되었다. 이들 광무시기의 호구파악 자료들은 그 기재 내용에 있어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가?

2. 호 파악의 현실

가사표에는 가호의 통호 번지를 기록하고 있으므로 당시 배양동에서 조사 대상이 되었던 가호들의 가사표가 분실되지 않고 모두 현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호적표의 경우는 조사된 모든 호가 현재까지 모두 현존하는 것인지, 혹은 그 일부만이 현존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¹²⁾

배양동은 일찍부터 합천이씨들의 동성촌락으로 자리잡아왔으며, 광무호적이 작성되던 당시에도 합천이씨가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1905년에 작성된 가

12) 더구나 호적표와 가사표 자료가 관청이 아니라 합천이씨가 개인에게 소장되어오던 것이라 그러한 의심을 더하게 한다. 그러나 합천이씨 개인이 소장하던 자료라고 해서 모두 합천이씨만의 자료는 아니다. 또한 호적표의 호주에는 합천이씨가 아닌 자들이 많다.

사표에는 합천이씨가 아닌 가옥 소유주, 즉 家主가 전체 40명 가운데 15명이다(38%). 그에 비해 호적표를 보면, 합천이씨가 아닌 호주는 1904년의 경우 30호 가운데 6호(20%), 1905년의 경우 28호 가운데 8호(29%)에 그치고 있다.¹³⁾ 합천이씨가 아닌 자의 비율로 볼 때, 현존하는 호적표에는 당시에 조사되었던 그러한 호주의 호적표가 다소 분실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에 반해 가사표에서 합천이씨가 거주인 경우는 25호인 것에 비해 호적표에는 합천이씨가 호주인 경우가 1904년에 24호, 1905년에 20호 두 해에 걸쳐 동일한 호를 제외하고 통합하면 29호로 나타난다. 즉, 합천이씨가에 한해서 볼 때에 호적표는 가사표에 못지않은 호수가 현존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당시에 호를 구성할 수 있는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가사표나 호적표가 작성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광무시기의 새로운 호구과약은 현존하는 모든 세대를 빠짐없이, 그리고 현실상의 세대 규모대로 하나의 호를 파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광무시기의 이러한 호구과약 방침이 실현되지 못했다면, 기존 호적의 호구과약과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어렵다.

<표 1-1>은 가사표의 통호 번지수 순으로 가궤 배양동에서는 호주와 일치한다)를 나열하고 거기에 호적표와 가호안의 기록을 대비해 본 것이다.

<표 1-1> 가사표의 기재내용과 호적표, 가호안의 기재내용 비교

가주·호주명	가사표			가호안		호적표(광무호적)					
	통호	칸수	가격	지번	칸수	시기	칸수	나이	직업	가족	호내 기혼자(나이)
이병관	1-1	3	300	水63	3	광8	6	38	사	6	弟 병문 29
임병조	1-2	2	150	水37	4						
이현주	1-3	3	70			광8	3	42	농	2	
양소사	1-4	2	50								
이상룡	1-5	2	70	水58	4	광8/9	3	26	농	2	
박귀석	1-6	2	20			광8/9	2	15	농	1	

13) 또한 1904년과 1905년의 호적표에 동시에 나타나는 21호와 1904년에만 보이는 9호 1905년에만 보이는 7호를 합해서 보면, 전체 37호 가운데 9호(24%)의 호주는 합천이씨가 아니다.

〈표 1-1〉 계속

가주· 호주명	가사표			가호안		호적표(광무호적)					
	통-호	칸수	가격	지번	칸수	시기	칸수	나이	직업	가족	호내 기혼자(나이)
윤필준	1-7	3	30								
이태주	1-8	3	200			광8	6	55	사	6	
이홍주	1-9	3	400	水65	3	광8/9	6	47	사	5	弟 북주36, 子 병윤1, 〈기구여1명〉
이채주	1-10	5	300			광9	6	54	사	4	
황하원	2-1	6	150	水64	5	광9	6	74	농	11	子석40, 子석30
이도영	2-2	4	50	水66	3						
이정화	2-3	4	40	水68	3						
이필주	2-4	4	50			광8/9	3	43	사	5	
이경주	2-5	3	40			광8/9	3	32	농	6	숙모52(從弟정주23)
이응주	2-6	3	30			광8/9	3	37	농	2	
이상련	2-7	2	20			광8/9	3	52	사	3	
이병원	2-8	2	20								
이상준	2-9	5	300	水80	3	광8/9	3	33	농	4	형수45(姪수룡17)
이무용	2-10	3	35			광9	6	68	농	16	子 수문45, 子 경주3, 姪 필용48
이상우	3-1	3	320	水85	3	광8/9	6	64	사	6	子 홍주25
이문윤	3-2	1	20								
이상화	3-3	1	20			광8/9	2	58	농	2	
권소사	3-4	2	25								
엄도범	3-5	3	15			광9	3	48	농	3	
이상진	3-6	2	20	劔69	2	광8	3	44	농	2	〈기구남2명, 여1명〉
이상홍	3-7	5	150								
이병두	3-8	2	25	劔49	3	광8/9	3	42	농	3	
심성이	3-9	2	20			광8/9	3	61	농	3	弟 우성44
김문성	3-10	1	10	劔45	3	광8/9	2	16	농	2	
신기생	4-1	1	50								
황 학	4-2	1	8								
임상오	4-3	6	280								

〈표 1-1〉 계속

가주·호주명	가사표			가호안		호적표(광무호적)					
	통·호	칸수	가격	지번	칸수	시기	칸수	나이	직업	가족	호내 기혼자(나이)
이종환	4-4	4	50			광8/9	3	49	농	8	子상도24
손천이	4-5	3	150								
김보술	4-6	9	420								
이영주	4-7	4	180								
이기주	4-8	3	110			광8/9	3	32	사	2	
이상승	4-9	2	20								
김맹철	4-10	5	20								

* 가사표에 기재되지 않은 가호안의 지번과 칸수 및 가주는 다음과 같다.

水79(3칸) 이수문, 水83(6칸) 이석주, 水87(2칸) 신덕일, 水88(2칸) 이점환, 水90(2칸) 이경준, 鋤44(6칸) 이점돌, 鋤68(3칸) 정정심

여기서 먼저 눈에 띄는 것은 가사표에 기록된 40호 이외에도 많은 호가 같은 시기의 배양에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1904년에 작성된 가호안과 1904년 및 1905년에 작성된 호적표에는 기재되나 1905년에 작성된 가사표에는 기재되지 않는 호들이 보인다.

지번에 따라 가호의 가주를 기록한 1904년의 가호안과 비교해보면, 가사표의 통호 번지수는 가옥이 위치하는 대로 파악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1〉에서 보듯이 1904년의 가호안에 가주로 잡히면서 1905년의 가사표에 등재된 가주는 가사표의 40호 가운데 12호에 지나지 않으나, 가호안의 가옥 지번과 가사표의 통호 순번을 비교해보면 대략적으로 등치하는 관계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사표의 1통1호에서 2통3호까지는 가옥 지번이 水60번대를 중심으로 그 이전의 지번이며, 2통9호에서 3통1호까지는 水80번대 전후, 그리고 3통6호에서 3통10호 사이에는 鋤자 지번이다.

그러나 가호안에 존재하는 가호로서 가사표에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가호안의 19호 가운데 7호나 된다. 이 가주들은 일년 사이에 배양동으로부터 이탈한 것일까? 단지, 가호안의 이러한 가주 가운데 이수문과 이경준은 이무용의 자식들인데, 1905년의 호적표에는 이무용을 호주로 하는 호의 호내 구성원으

로 기재되어 하나의 호로 합호되었음을 짐작케 한다. 1905년에 작성된 가사표에는 가호안의 이수문과 이경준은 사라지고 2통10호의 가주로 이무용이 등재될 뿐이다. 이 경우를 제외한 가호안의 5호는 가사표의 통호 번지 사이에 존재하면서 끝내 하나의 호로 등재되지 못하였다. 더구나 이렇게 가사표의 기재에 누락된 가옥에는 그 가운데 2호의 가옥 규모가 초가 6칸으로 가사표 전체에서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가옥도 존재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표 1-2>와 같이 호적표에 등재된 호가 가사표에는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14호나 된다. 광무8년(1904)의 호적표에만 등재되었던 5호가 가사표에 나타나지 않음은 물론, 광무9년(1905)의 호적표에 등재되었던 9호도 가사표에 보이지 않는다. 이 가운데 호주가 이상영인 호에는 질자 이영주가 호내구성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가사표에는 이상영이 보이지 않고 그 대신에 이영주가 4통7호의 가주로 나타난다 이것은 단지 호적표가 작성된

<표 1-2> 가사표에 기재되지 않은 호적표의 호

호주명	시기	칸수	나이	직업	가족	호내 기혼자(나이)
이상호	광8/9	6	32	사	2	
임철규	광8/9	6	45	농	5	子관기45
이상혁	광8/9	3	38	농	3	형수49(姪명룡24)
이호주	광8/9	3	48	농	4	從弟 수익23
장귀복	광8/9	3	52	농	4	
이상영	광8/9	2	69	농	8	姪영주42*
이덕환	광8	3	81	농	2	
이병우	광8	3	50	농	2	
이상갑	광8	2	31	농	1	
조개불	광8	2	13	농	1	
이해중	광8	1	46	농	2	
심도상	광9	4	47	농	3	
이성주	광9	3	35	농	3	
이상성	광9	2	46	농	4	

1905년 2월 이후 가사표가 작성되는 그해 10월 사이에 이상영과 그의 직계가족이 배양동을 떠나서 벌어진 사항만으로 이해되지는 않는다. 가사표에 나타나지 않는 14호 가운데에는 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호주의 직업이 '샤인 호'를 포함하여 가옥 규모가 초가 6칸인 호가 2호 보인다. 따라서 가사표는 호를 구성할 수 있는 배양동의 모든 가사(가옥)를 파악하지는 않았으며, 그것은 호의 가옥 규모와 상관없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그런데 가사표에 기재된 가옥 규모는 호적표의 그것과 서로 다른 성격을 갖는 것으로 여겨진다. 가호안에 이수문과 이경준이 거주로 있는 가옥의 규모가 각각 초가 3칸 2칸인데 이들이 호내 구성원으로 있는 호적표의 이무용 호는 초가 6칸이다. 칸수가 꼭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합호라 할 때에 여러 호를 하나의 호로 등재할 경우에는 그 규모도 합산하여 하나의 가옥으로 인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가사표에는 이무용 호가 초가 3칸만 기재되고 3칸의 시가는 35량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반대의 경우로 이상영과 이영주가 소유하는 가옥의 규모도 호적표와 가사표에서 다르게 나타난다. 호적표의 이상영 호는 가옥 규모가 2칸에 지나지 않으나 필자인 이영주 부부를 포함하여 다수의 가족을 포함한다. 그런데 가사표에는 이영주가 거주인 호의 가옥 규모가 4칸으로 더 많게 기재되며 4칸의 시가는 180량이나 된다. 이무용 호와 이상영 이영주 호의 이러한 기재는 가사표의 가옥 규모 및 시가 기재의 전체적인 경향으로부터 이해될 필요가 있다.

가사표에는 가옥 규모와는 별도로 가옥의 시가가 기재되는데, 가옥의 시가가 큰 순으로 나열하고 그에 따라 호적표에 동시에 기재되는 호들의 칸수 및 호주의 직업, 가족수를 병기하면 <표 2>와 같다

가사표에 기재된 시가를 한 칸당의 단가로 계산해볼 때, 가사표의 가옥 규모와 칸당 단가의 상관관계를 찾기 어렵다.¹⁴⁾ 반면에 몇몇 예외적인 존재를 제외하고 대체로 시가가 높은 호들이 칸당 단가가 높은 경향을 읽을 수 있다.

14) 가사표에 등재된 40호 가운데 1칸인 5호의 단가 평균은 22량, 2칸인 11호의 경우는 20량, 3칸인 12호의 경우는 47량, 4칸인 5호의 경우는 19량, 5칸인 4호의 경우는 39량, 6칸인 2호의 경우는 36량, 9칸인 1호의 경우는 47량이다.

〈표 2〉 가사표와 호적표의 칸수 기재 비교

칸수의 다소구분	가사표			호적표		
	칸수	시가(량)	단가(량)	칸수	호주의 직업	가족수(명)
동일한 경우	6	150	25	6	농	11
	3	110	37	3	사	2
	3	70	23	3	농	2
	3	40	13	3	농	6
	3	30	10	3	농	2
	3	15	5	3	농	3
	2	20	10	2	농	1
가사표에 적게 기재된 경우	3	400	133	6	사	5
	3	320	107	6	사	6
	3	300	100	6	사	6
	5	300	60	6	사	4
	3	200	67	6	사	6
	*3	35	12	6	농	16
	2	70	35	3	농	2
	2	25	13	3	농	3
	2	20	10	3	사	3
	2	20	10	3	농	2
	2	20	10	3	농	3
	1	20	20	2	농	2
1	10	10	2	농	2	
많게 기재된 경우	5	300	60	3	농	4
	4	50	13	3	농	8
	4	50	13	3	사	5

또한 호적표에 동시에 기재되는 호들을 이것과 대비해 보면, 시가가 높은 호들은 대체로 호적표의 칸수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가사표에 기재된 가옥 규모는 호적표에 기재된 가옥 규모와 달리 그로부터 조절된 수치인

반면에 가사표의 가사 시가는 호적표의 가옥 규모를 감안하여 기재된 것임 짐작할 수 있다. 단지 이런 의미에서 상기의 가사표에 기재된 이무용 호의 가옥 규모는 상당히 예외적인 존재이다.

그러면 가사표의 가옥 규모는 호적표로부터 어떠한 조정이 이루어졌는가? 호적표와 가사표에 동시에 등재된 23호 가운데 가옥 규모가 동일한 경우는 7호에 그친다. 이에 비해 가사표의 기재가 호적표보다 더 적은 경우가 13호나 되며, 가사표의 기재가 더 큰 경우는 3호에 지나지 않는다. 가사표의 가옥 규모가 호적표의 그것보다 적게 기재된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가사표의 호들이 호적표의 호로부터 분호된 결과가 아니라 가사표의 가옥 규모가 호적표의 그것보다 과소평가된 결과로 추정된다.

그리고 가사표에 과소평가된 호들은 가사의 시가가 매우 높거나 매우 낮은 경우에 많이 분포되어 있다. 특히 가옥의 시가가 높으면서 가사표에 가옥 규모가 과소평가된 5호는 호적표에 모두 합천이씨로 가옥 규모가 6칸이며 호주의 직업이 '사'로 기재되어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호주의 직업이 '사'라고 해서 모두 가옥의 규모가 크거나 시가가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직업을 '사'로 기재하는 호주들은 대체로 큰 가옥 규모를 소유하여 상대적으로 경제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분적으로도 배양동에서 상위 계층을 이루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들이 배양동 내의 사회 권력을 이용하여 가사표에 가옥 규모를 적게 기재할 수 있었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에 반해 가옥의 시가가 낮은 호들에 대해서는 가사표에 가옥 규모를 낮게 조정하여 호의 경제적 규모를 현실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몇몇 호에 대해 호적표에 기재된 가옥 규모보다 큰 수치로 가사표의 가옥 규모를 기재한 것도 가옥의 시가에 맞추어 조정한 결과로 보인다. 한편 호내 구성원의 규모에 대해서는 호의 가옥 규모나 시가와 상관을 찾기가 어렵다.

호적표에 호주가 소유하는 가옥의 규모를 기재하면서 다시 가옥의 시가를 가사표라는 형식으로 파악한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호적표로 파악될 수 있는 호의 전부가 아니라 그 일부를 가사표에 기재하고, 그 일부의 호에 대해서도 호적표의 파악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고 가옥의 규모를 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에 대한 분명한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우나 당시의 호세수취와 관

련하여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중앙정부는 갑오개혁 이후 각종 부세를 전세와 호세로 단일화되는 새로운 부세 체제를 추진하고 있었다.¹⁵⁾ 호에 대한 과세는 주로 환곡운영이나 지방 재정운영상의 적자를 매우기 위해 지방관청 차원에서 이루어져 왔다. 여기에 19세기 후반에는 군역을 호에 부과하는 호포제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시행되었다. 갑오개혁 이후의 호세는 호에 대한 이러한 여러 가지 부과를 세제로 일원화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과세하는 것이었다. 중앙정부는 여전히 호적 작성을 통한 호구과약 결과를 지방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있었으나, 광무시기의 호세 수취와 관련해서 수세가 가능한 현실적인 호의 파악을 중용하였다.

호적표의 호주에게는 가호에 대한 법적 권리가 주어지면서 그것을 근거로 호세를 담당할 의무가 동시에 주어졌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가호의 소유권을 확정하면서 지역사회 전체의 호세 부과 대상을 파악한 가호안은 호적표로 파악된 호수를 훨씬 밀도는 수치로 보고되었다. 이때의 가옥 규모도 호적표의 그것보다 하향 조정된 수치로 보고되었다. 가옥의 규모가 호에 대한 호세 부과량의 다소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호세 부과 불균형을 조정하는 의미를 지녔을 것으로 여겨진다.

가사안은 현지의 호적 조사로부터 호세 대상을 중앙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서류양식이라 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가사안의 작성을 통하여 가호안보다 많은 수의 호를 파악함으로써 호세 대상을 더 많이 확보함과 동시에, 호주가 소유하는 가옥의 규모뿐만 아니라 그 가옥의 시가를 기재함으로써 호세 부과 불균형을 해소하는 근거로 삼으려 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지방의 호구과약 당사자들은 중앙정부의 의도와 지역의 세력관계 등을 감안하여 가사안의 기재를 조정하였던 것으로 여겨진다.

가사안의 호수보다 현존하는 호적표의 호수가 적다. 그러나 호적표에 파악된 많은 호가 가사안에 파악되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가사안의 가옥 규모를 조정하는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 호적표의 가호 파악은 상대적으로 현실성

15) 김재호, 「갑오개혁이후 근대적 재정체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7; 김태웅, 「개항전후~대한제국기의 지방재정개혁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7.

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광무시기의 호적표는 기존의 호적과 비교하여 호구과악에서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었는가?

3. 기존 호적과의 비교

기존의 호적에 기재되던 '職役'과 유사한 서식으로 호주의 '직업'이 기재되었다. 위에서 호주의 직업은 가옥의 규모 및 시가와 관련하여 호주의 경제력과 일정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되었다. 그러나 호내 구성원의 규모는 가옥의 규모나 시가와 상관을 찾기 어려웠다. 호적표의 '직업'의 기재와 호구 등재는 기존 호적의 '직역' 기재 및 호구 등재와 어떠한 연속성과 차별성이 존재하며 그 의미는 무엇인가?

우선 호적표의 직업 기재를 살펴보도록 하자. 기존의 호적에는 호내의 구성원 개개인에게 직역이 기재되었으나, 호적표에는 호주에게만 직업이 기재되었다. 호적표는 호주로서 호를 구성한 자에게만 '사·농'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규정하고 호내 구성원의 신분에는 무관심했던 것이다. 이것은 마치 호주의 가족을 포함한 하나의 호에 대해 신분을 규정한 것과 같은 과악방법으로, 호를 넘어서서 호와 호의 사회관계 속에서 신분적 차등성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배양동의 경우에 직업은 '사'와 '농'만이 기재되고 '사'를 기재하는 자는 모두 합천이씨임을 이미 언급하였다. 그러나 합천이씨 가운데 '농'으로 기재된 호주가 더 많다. 합천이씨의 어떠한 관계에서 '사'와 '농'이 구분되었는가를 보기 위해 합천이씨 호주만을 대상으로 가계를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단성군 원당면의 배양동에는 이승문의 자식인 원, 청, 잠, 숙 등의 후손이 세거하였다.¹⁶⁾ 그 가운데 이잠의 자손이 1900년대까지 가장 많이 현존하였으며 나머지 형제들의 후손은 타지로 이주하거나 대가 끊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호적표에는 이잠의 증손인 정사와 정한의 후손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이들 후손을 몇 개의 가계로 나누어 28명의 호주를 분류해보면 호주의父나 호주 자신이 그 가계의 종손인 경우가 그 가운데 10명이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되는

16) 『陝川李氏族譜』, 배산서원 간, 1926(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표 3〉 호적표에 기재된 합천이씨 호주 사이의 사조관계와 가계 계보

호주명	시기	칸수	나이	직업	합천이씨가계 계보	四祖 관계	가사표기재여부
이태주	광8	6	55	사	잠-정시-동우-석준	기한-상보 자	0(3칸)
이채주	광9	6	54	사	잠-정시-동우-석준	기한-상보 자	0(5칸)
이응주	광8/9	3	37	농	잠-정시-동우-석준	기한曾孫	0
이병관	광8	6	38	사	잠-정시-동우-석후	일준曾孫	0
이상련	광8/9	3	52	사	잠-정시-동우-석현	필무曾孫	0
이상화	광8/9	2	58	농	잠-정시-동우-석태*	일무曾孫	0
이흥주	광8/9	6	47	사	잠-정시-동우-석표*	기팔-성진 孫	0
이한주	광8	3	42	농	잠-정시-동우-석표	기팔-성진 孫	0
이경주	광8/9	3	32	농	잠-정시-동우-석표	기팔曾孫	0
이병우	광8	3	50	농	잠-정석-동작-석륙	경진曾孫	
이병두	광8/9	3	42	농	잠-정석-동작-석륙	경진曾孫	0
이상우	광8/9	6	64	사	잠-정한-동안-석증	심간-경환 자	0
이기주	광8/9	3	32	사	잠-정한-동안-석증	심간-경환 孫	0
이필주	광8/9	3	43	사	잠-정한-동안-석증	심간曾孫	0
이상룡	광8/9	3	26	농	잠-정한-동안-석증	심간從弟孫	0
이상혁	광8/9	3	38	농	잠-정한-동안-석증	한복曾孫	
이상성	광9	2	46	농	잠-정한-동안-석증	한복曾孫	
이상준	광8/9	3	33	농	잠-정한-동안-석증	한복曾孫	0
이덕환	광8	3	81	농	잠-정한-동안-석형	석형曾孫	
이상영	광8/9	2	69	농	잠-정한-동원-석조	한규-응환 자	이영주(응환 孫)
이상호	광8/9	6	32	사	잠-정한-동산-석년	한식曾孫	
이종환	광8/9	3	49	농	잠-정한-동산-석년	한식 孫	0
이상갑	광8	2	31	농	잠-정한-동산-석범	한겸曾孫	
이해중	광8	1	46	농	잠-정범-동함-석권	석권曾孫	
이성주	광9	3	35	농	원-정남	의문曾孫	
이호주	광8/9	3	48	농	청-정호	기형曾孫	
이상진	광8	3	44	농	숙-계룡*	석하曾孫	0
이무용	광9	6	68	농	?	상봉 孫	0

* 가계의 계보는 『합천이씨족보』(배양서원간)를 참고하였다.

* (*)표는 호주의 父나 자신이 그 가계의 종손임을 나타낸다.

것은 이 10명 가운데 7명이 호주의 직역을 '사'로 기재한다는 사실이다. 합천 이씨로서 호주의 직업을 '사'로 기재한 호는 9호인데 그 가운데 2호 이외에는 모두 몇 개로 분류한 가계의 종가인 셈이다. 또한 이들 호의 가옥 규모는 상대적으로 큰 편이며, 파계 종손으로 '사'를 기재하지 않는 3명 호주의 가옥 규모는 3칸을 넘지 못한다.

파계의 종손은 수대에 걸쳐 그 가계의 재산을 상속 받으면서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위상을 유지하고 신분적으로도 가계 내부에서 존중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사회 내부에서의 신분관계가 국가적인 문서인 호적의 직업 기재에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호적표의 호주들은 주로 祖父 대에서 갈라져서 호를 구성하고 각각 직업을 달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기존의 호적에서 이들의 조부를 찾아보면 종손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대부분 '유학'이라는 직역을 사용하고 있다.¹⁷⁾ 기존의 호적에는 국가적 신분이라 할 수 있는 직역으로 사회현실상의 신분적 차등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다.

기존의 호적은 지역내의 직역 총수에 따라 직역을 개개인에게 배분하는 형식으로 기재되었다.¹⁸⁾ 또한 직역 총수는 대체로 1호 1직역의 계산으로 호총에 맞추어진 것으로 여겨진다.¹⁹⁾ 그러나 호적을 작성하는 현실에서는 호마다 1직역이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고 지역적인 총수로서만 맞추어질 뿐이었다. 호적표는 직업을 호주에게만 기재함으로써 1호 1직역을 기재한 셈이 된다. 직역과 마찬가지로 호주의 직업을 하나의 국가적인 신분 규정이라 한다면, 신분을 규정하는 방법에서는 기존의 호적과 원칙을 계승한 측면이 없지 않다.

또한 광무시기의 국가적인 신분규정은 국역이라는 제한된 의미를 벗어나서, 사회내부에서 차등적으로 인식되는 사회현실적 신분질서를 반영하고 있다. 이것은 기존의 호적에 기재된 직역이 18세기 중엽 이후 사회현실적인 신분질서와 괴리되어가고 19세기에는 직역만으로 사회현실적인 신분질서를 전

17) 『경상도단성현호적대장』(원당면호적중초, 1825년, 1828년, 1864년).

18) 손병규, 「호적대장의 직역기재 양상과 의미」, 『역사와 현실』 40, 2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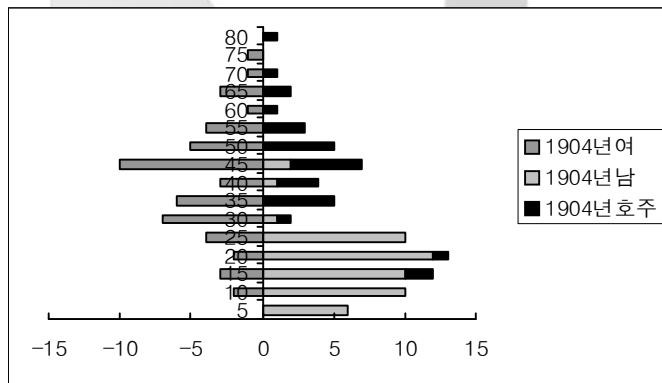
19) 김건태, 「호구출입을 통해본 18세기 호적대장의 편제방식」, 『대동문화연구』 42, 2003.

혀 구별할 수 없는 현상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²⁰⁾ 그러나 기존의 호적작성은 원칙상으로는 사회현실적 신분질서를 감안하여 직역을 부과하고자 하였다. 광무시기의 호주 직업은 이러한 원칙을 현실로서 적용하여 기재하고자 하였으므로 이 점 또한 기존 호적의 직역기재로부터 원칙적인 측면에서 계승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기존의 호적이나 족보를 통해서 보건대, 현존하는 호적표에 나타나지 않는 합천이씨들이 많다. 단성의 원당면 호적은 19세기에는 1825년과 1864년의 호적중초만이 현존한다. 이 호적에 등재된 배양의 합천이씨와 그 자손 가운데 19세기 후반기에 타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광무시기에 현존하여 호적표에 등재될 수 있을 법한 자들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이주의 여부나 호적표의 현존 정도를 확인할 길은 없다. 단지 현존 호적표의 호구 등재 경향을 기존 호적의 그것과 비교함으로써 호구구성의 차이를 확인할 수는 있다. 여기서 호적표에 등재된 인구의 남녀 연령별 분포도를 통하여 이러한 사항을 살펴해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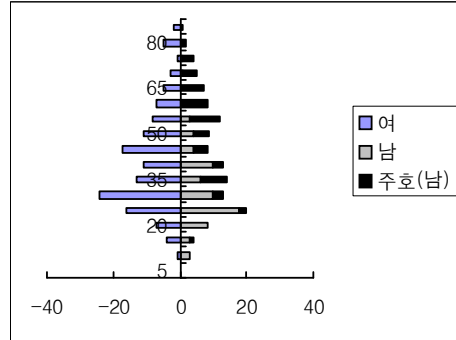
1825년의 호적에 등재된 배양리의 호수는 63호, 남녀 인구는 모두 266명으로 호당구수는 4.2명이며, 남성 131명, 여성 135명으로 서로 비슷한 수치를

〈그림 1〉 1904년 광무호적 등재자의 연령별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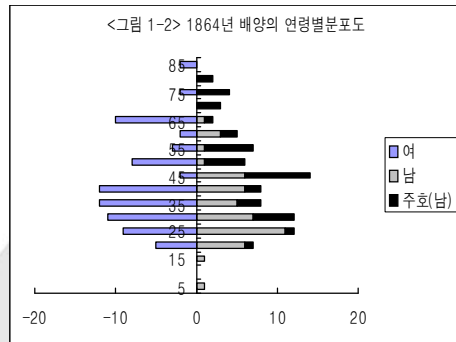


20) 손병규, 「인구사적 측면에서 본 호적과 족보의 자료적 성격 — 17~19세기 경상도 단성현의 호적대장과 합천이씨가의 족보」, 『대동문화연구』 46, 2004.

<그림 1-1> 1825년 배양의 연령별분포도



<그림 1-2> 1864년 배양의 연령별분포도



나타낸다. 또한 1864년의 호적에 등재된 배양리의 호수는 43 호, 남녀인구는 모두 170명으로 호당구수는 4.0 명이며, 남성 92명 여성 78 명으로 남성이 약간 많은 편이다. 그런데 1904년의 호적표 30호에 등재된 자는 모두 140 명으로 호당 구수는 4.7명인데, 남성이 86명, 여성이 54명으로 남성인구가 월등히 많다.

남녀인구의 연령별분포도를 보면, 1825년의 호적에는 남녀 모두 20세 이하의 인구가 많이 결여되어 있는 가운데 특히 15세 이하의 연소자들이 등재되지 않았는데 1864년에는 그러한 현상이 심화됨을 볼 수 있다 이에 비해 1904년 호적표의 남녀인구 연령별분포도를 보면 여성은 40세 이하의 연령층이 결여된 상태로 19세기에 비해 결여된 여성의 연령대가 올라가는 정도이나, 남성

의 경우에는 25세이상 40세 이하의 남성이 많이 결여되어 있는 반면에 25세 이하의 남성 인구가 현격히 많이 등재되었다. 남성이 여성보다 많은 것은 25세 이하의 남성이 상대적으로 많이 등재된 때문이다.

여기서 이러한 25세 이하의 남성은 주로 호내 구성원으로 등재되며 25세 이상의 남성은 주로 호주임이 주목된다. 이것은 19세기의 호적에 많은 수의 30~40대 남성이 호내 구성원으로 등재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19세기 호적에는 주호의 장성한 자식들이 많이 등재되나 15세 이하의 자식과 손자들은 등재되지 않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비해 광무시기의 호적표에는 장성한 자식이 호주로 독립하여 그의 어린 아들들이나 25세 이하의 방계가족을 주된 구성원으로 호를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또한 25세 이상으로 장성하였으나父가 죽고 자식이 없거나 어린 경우의 남성은 호주로서 하나의 호를 구성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족보에 기재되고 광무시기에 배양동에 거주했을 법한 남성들이 호적표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주로 이러한 경우이다.

기존의 호적에서 15세 이하의 남성이 등재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은 그들이 군역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18세기에는 연소자층의 여성이나 예속인을 등재하여 지역의 인구총수인 口總을 맞추었으나, 19세기에는 장년층을 중심으로 구총을 맞추는 것이 단성 전체의 경향이였다.²¹⁾ 이에 비해 광무시기의 호적표에는 군역 대상이나 구총과 관계없이 남성이 등재되었으며, 단지 하나의 독립된 호를 세울 것인가 아닌가가 관심사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독립된 호의 호주는 가옥을 소유할 수 있는 남성이 그 현실적인 대상이 되었던 것이다. 광무시기의 호적표는 인구등재에 있어 기존의 호적과 많은 차이를 나타내나, 호를 선택적으로 등재하고 그에 따라 임의로 호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호적과 연속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9세기 호적에서 배양의 호수는 1825년에 63호, 1864년에 43호로 나타난다. 이에 비해 광무시기의 호수는 가호안에 19호, 가사표에 40호로 파악되었다. 기존의 호적에는 호를 세울 수 있는 많은 인구가 누락되었다는 것을 감안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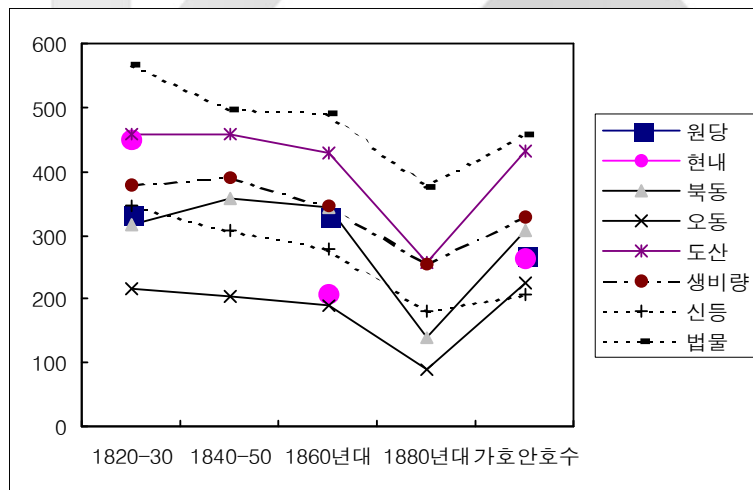
21) 김진태, 「조선후기의 인구과약 실상과 그 성격 — 단성현 호적 분석」 『대동문화연구』39, 2001.

때, 광무시기에는 더욱 한정된 범위에서 호가 파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은 광무시기 직전인 19세기 말의 열악한 호구파악으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이었음을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가호안은 배양동뿐만 아니라 단성군의 모든 면을 망라하고 있어 기존의 호적과 비교할 수 있다. 현대면과 배양동이 속한 원당면은 1820년대와 1864년의 호적만 현존하나, 다른 면들은 1840~50년대, 1880년대의 호적이 현존한다. 19세기 단성현의 면별 호수 추이를 1904년의 가호안상의 면별 호수와 비교해보면 <그림 2>와 같다

19세기 초 이후 19세기 후반에 접어들 때까지 단성 각면의 호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의 추세를 보이면서도 커다란 변화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후술하는 전국규모 호수 변화의 추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런데 전국규모에서 호수가 일시적으로 증가 감소를 반복하여 호수 변화가 유동적이었던 1880년대에, 단성의 각 면들은 전체적으로 호수가 대폭 감소하였다. 그리고 가호안의 호수는 이로부터 19세기 전반의 수준으로 회복되는 과정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19세기 단성현 각면의 호수 추이와 1904년 가호안호수 비교



* 1820년대~1880년대는 『경상도 단성현 호적대장』, 가호안호수는 1904년 『경상남도 단성군 가호안단』의 호수임.

19세기 각 면의 호수추이가 전체적으로 유사한 변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식년마다의 호적작성 과정에서 각 면의 호총이 단성전체의 호총에 비추어 균등하게 조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즉, 가호안의 면별 호총도 단성전체에 비추어 조정된 결과임을 말한다. 그런데 배양리는 1825년에 원당면에서 70 호인 입석 다음으로 많은 호수를 보유하는 지역이었으나, 1864년에 감소하고 1904년에는 원당면 안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호수가 책정되었다. 면내의 동리들도 기본적으로는 동리의 호수를 면의 호총에 비추어 균등하게 조정하였을 것이나, 면 내부의 호수 조절은 면 단위의 호총 조정보다 변수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광무시기 배양동의 가호안 작성에 있어 가호수를 낮게 책정했다는 것은 지역 단위의 호세 부담이 하향조정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가호수의 조정은 배양동에 거주하는 자들이 가호안 작성과정에 관여할 정도로 원당면 내에서 정치권력을 발휘할 수 있거나, 아니면 기존의 호수로는 호세를 부담하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경제 환경에 있기 때문에 발생했다고 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가 주된 원인이 아닐까 추측된다.

그러나 가사표를 작성함에 있어 가호안의 호수 19호는 다시 40호로 증가하였다. 호수 파악이 전반적으로 강화되는 경향 속에서 배양동은 다른 지역과의 균형을 맞추어 상향조정된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가사표에 가호수를 증가시키면서 어느 가족의 누구를 거주서 등재할 것인가의 여부와 함께 가옥의 규모를 어떻게 기재할 것인가 등을 놓고 배양동 내부에서도 조정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호적표의 분석에서 보았듯이 여기에는 배양동에 거주하는 합천이씨의 정치 경제적 관계가 크게 작용하였을 것이라는 점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Ⅲ. 19세기말~ 광무시기의 호구정책 - 전국과 濟州 德修 里 사례의 비교

1. 19세기 호구총수의 변화

중앙정부는 18세기 말의 『戶口總數』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지의 호적대장에 '도이상'조나 면별 '이상'조로 기재된 호구통계를 수합하여 전국규모로 호구수를 파악하고 있었다. 중앙의 인구조사는 호적작성을 통하여 지방에서 시행되는 호구파악에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漏戶, 漏口는 물론 호구통계의 허위기재에 대해서 가혹한 처벌규정을 제시하여 자의적인 호구파악을 경계하였다. 그러나 지방의 현실은 그 지역의 호구총수를 적정선에 두고 그로부터 감소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 만족하고 있었다.

주지하다시피 19세기 초 이후 전국 호구수는 18세기 말보다 하향하여 19세기 말에 이르기까지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였다.²²⁾ 이 시기의 호적에 대한 연구는 호적대장 본문의 호 구성이 조선전기의 이상적 호구형태로 일률화하는 경향이 있으며, 호구 통계인 '都已上'조에서도 개별인구의 지역별 통계수치가 매 식년마다 고정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²³⁾ 중앙정부 차원의 고착적 호구정책이 호적대장의 형식화를 초래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삼정문란을 죄목으로 하는 19세기 후반의 농민운동과 그에 대응한 호포제 등의 개선책 실시에 이르러서 전국규모의 호구수도 변동하기 시작했다. 1870~80년대의 전국규모 호구수의 변화는 구수에서보다 호수에서 상대적인 요동을 나타내었다. 김건태는 18세기 중엽 이후 이 시기에 이르기까지 전국규모 호구수로부터 산출한 호당구수가 4.1~4.2로 거의 균일한 수치를 보인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호당구수가 호구편성의 하나의 기준이 되었음을 지

22) 김건태,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인구기재 양상」, 『역사와 현실』 45, 2002.

23) 손병규, 「호적대장 지역간의 구역 기재와 도이상의 통계」, 『대동문화연구』 39, 2001.

적한 바 있다.²⁴⁾ 그런데 1879년부터 1890년대 사이에 호당구수는 이 수준으로부터 하락하거나 다시 회복하는 반복을 거듭하고 있어 호구조사가 불안정하게 되는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표 4〉).

〈표 4〉 1873~1912년 사이의 전국과 덕수리의 호구총수 및 호당구수 변화

연도	전국의 호구총수			덕수리의 호구총수		
	호수	구수	호당구수	호수	구수	호당구수
1873	1606134	6722404	4.2	81	586	7.2
1876	1607751	6691757	4.2	81	556	6.9
1879	1944598	6648610	3.4	78	541	6.9
1882	1571875	6610311	4.2	77	550	7.1
1885	1793922	6717453	3.7	74	532	7.2
1888	1584794	6650077	4.2	74	513	6.9
1891	1576672	6633166	4.2	75	513	6.8
1897	1332501	5198248	3.9	170	526	3.1
1899	1357037	5340901	3.9	164	552	3.4
1900	1397630	5608151	4.0	156	550	3.5
1901	1409344	5713244	4.1	154	550	3.6
1902	1405116	5782860	4.1	151	537	3.6
1903	1418530	5891595	4.2	136	543	4.0
1904	1374969	5629487	4.1	136	548	4.0
1906	2333087	9781671	4.2	167	549	3.3
1909	2742263	12934282	4.7	197	565	2.9
1910	2749956	13128780	4.8			
1911	2813925	13832376	4.9			
1912	2885404	14566783	5.0			
*1899년	3480900	16000000	4.6			

* 전국규모의 호구총수는 왕조실록 및 관보, 공안에서 확인한 수치이며, 덕수리의 호구총수는 제주도 덕수리 호적중초에서 계산한 수치이다.

* *1899년의 조사는 외국인이 파악했다고 하는 호구수다(출전: 『독립신문』, 5월 10일자).

24) 김건태, 「조선 후기 호의 구조와 호정운영 — 단성호적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40, 2002.

그런데 이 수치는 전국 각지의 호구수를 통합한 것으로 각 지역마다 호구수의 변화는 다양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전국 호구총수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연도에 지방의 호구수를 보여주는 곳은 제주도 대정현 각 지역의 호적중초이다. 정진영은 조선시대 호의 편제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19세기 제주 하모슬리와 하원리의 호구수 변화를 제시한 바 있다.²⁵⁾ 여기서는 제주덕수리의 호구수 변화를 전국규모 호구수의 변화와 비교해보도록 하자. 제주의 경우는 광무호적이 작성되는 시기에도 민적법이 적용되기 직전까지 기존의 호적대장 양식을 사용하고 있다.²⁶⁾

전국규모의 호수와 호당구수가 요동치는 1880년대 직전부터 광무시기 이후에 걸쳐 전국의 호구수, 그리고 제주도 덕수리의 호구수 변화에 대한 지수변동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 <그림 3>이다. 이 지수는 1800년대를 기준으로 하였다. 그 이유는 제주도 덕수리의 호구수가 1806년 전후에 전국적 일반성을 보이거나 이후에는 그것과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즉, 1870년대 이후의 변화를 19세기의 전반적인 변화에 기초하여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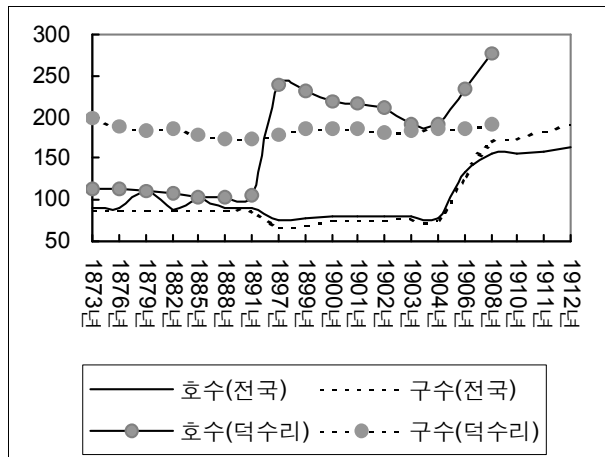
19세기 초부터 호당구수 4.2~4.3 명을 유지하며 전국 호구수와 호당구수가 고정화되어 이러한 현상이 1870년대까지 지속되었다. 제주도의 덕수리도 1806년에는 호당구수 4.2를 기록하며 전국적 일반성을 가지나, 이후로 호수는 광무시기 직전까지 고정적인 반면, 구수는 19세기 중엽까지 두 배로 증가하여 호당구수가 7명에 이른다. 제주도는 19세기 전반기를 통하여 이미 호총에 비해 구총을 월등히 많이 확보해왔던 것이다.²⁷⁾ 한편, 단성 8개면의 경우에는 1820년대와 1860년대에 호당구수가 모두 4.0명으로 전국규모의 호당구수와 크게 차이가 없다.

25) 정진영, 「조선후기 호적 호의 편제와 성격」, 『대동문화연구』 40, 2002. 하모슬리와 하원리의 호구수 변화는 덕수리의 호구수 변화와 대동소이하다.

26) 『濟州大靜縣德修里戶籍中草』(1993년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영인). 고창석의 해제에 집계된 호수와 구수를 이용하였다.

27) 정진영은 제주도가 높은 직역부담이 존재하는 대신에 호역의 부담을 낮추어 책정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제주도가 관방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에서 기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호역부담을 낮춘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그림 5〉 전국과 덕수리의 호수 및 구수의 지수변화



또한 전국의 호수가 등락하면서 호당구수가 3.4명, 3.7명으로 하락하는 경우가 보이는 1880년대 전후에 단성의 6개면은 호구수가 동시에 감소하는 좀 다른 현상을 보이거나, 호당구수는 3.6명으로 전국규모의 변동에 동조하고 있다.²⁸⁾ 이에 비해 덕수리의 경우에는 19세기 중엽의 호구수 및 호당구수의 수준을 광무시기 직전까지 지속적으로 유지하였다. 제주도는 전국규모의 호구수 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고 지방 나름대로의 관례대로 호적을 작성해갔다고 할 수 있다. 호적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호적에 기재되는 인구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호수를 증가시키려는 시도가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었으나, 그것이 전국 일률적인 현상은 아니었던 것이다.

이 시기 전국 호구수의 변화는 지방의 호구파악 상황에 전적으로 흔들리는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시기는 호구파악에 대한 중앙정부의 대책을 일깨워줄 수 있는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전국적인 범위에서 호구정책이 소홀함을 인식하는 것은 갑오농민전쟁을 경험한 뒤이다.²⁹⁾

28) 1880년대의 단성현 호적은 8개면 가운데 6개면의 중초로만 남아있는데 6개면 전체의 호수는 1292호, 구수는 4655명이다.

29) “17日에는 東徒 數千名이 靈光郡에 突入하여 軍器庫에 불지르고 戶籍을 태워버리며郡

1894년 6월25일에 군국기무처를 설치하고 중앙관제로서 전국의 재정을 총괄하는 度支衙門을 설치하기에 앞서,³⁰⁾ 그달 13일에 議政府는 호적법을 구례대로 다시 새울 것을 고종에게 제의하였다.

戶籍을 式年마다 반드시 고쳐 작성하는 것은 백성의 수를 알고 나라의 근본을 소중히 하기 때문인데 근래에 호적법이 해이되어 이 해도 벌써 절반이 지나갔으나 아직 일제히 올라오지 않았다고 하니 나라의 규율로 보아 매우 해괴한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중앙과 지방의 호적을 『大典會通』에 실려있는 그대로 실지대로 작성하여 보고하게 하여 옛 규례를 거듭 강조하도록 각별히 엄하게 신칙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³¹⁾

중앙정부는 현실적인 호구과약이 구례의 호적법에 근거하여 시행되지 못한다고 인식하고 조선왕조가 법제로서 재확인해 온 호구과약의 원칙을 그대로 적용시키는 것이 당시 호구정책의 최선이라고 여겼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갑오개혁기의 재정정책에서도 관철되고 있었다.³²⁾

2. 광무시기의 호구정책

실제로 전국 호구총수의 급격한 변화는 대한제국이 성립하는 1897년과 통감부 시기가 시작하는 1906년에 나타난다. 앞 시기에는 호당구수와 함께 전국 호구수가 감소하고 이후로 호당구수를 18세기 중엽 이후로 예년대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그 수준을 유지하다가 뒷 시기에 양자 모두 유례없이 격증하고 있다. 앞 시기의 변화는 1896년 9월에 반포된 勅令 第61號의 '戶口調査規則'과 곧이어 반포된 '細則'에 영향을 받았으며³³⁾ 뒷 시기의 변화는 1906년

衙를 破碎하고 還去하였는데……”(『承政院日記』高宗 31年 4月 24日).

30) 『日省錄』, 고종31년 6월8일

31) 『고종실록』, 고종31년 6월3일

32) 손병규, 「대한제국의 재정, 그 이념적 굴절에 대하여」, 『새로운 질서를 향한 제국 질서의 해체 — 역사』, 청어람미디어, 2004.

33) 建陽 元年(1896) 9월1일에 勅令 第61號로 戶口調査規則이 발령되었으며(『官報』 건양

의 ‘管稅官官制’의 제정에서 시작하여 국가재원의 근거를 현실적으로 파악하고자하는 시도에 영향을 받은 듯하다.³⁴⁾

1896년에 반포된 ‘호구조사규칙’에는 “原戶를 隱匿하여 漏籍하거나 原籍 내의 人口를 故意 漏脫하는”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하고, 나아가 ‘호구조사세칙’에는 “戶主의 父母·兄弟·子孫이라도 各戶에 分居하여 戶籍이 別有한 時는 該 籍內에 填入치 아니하여 人口가 疊載치 않게” 하라고 하여 실제의 인구들을 모두 호적의 호구로 기재해야 할 듯이 말하고 있다. 이것은 조선왕조를 통해 줄곧 강조되어온 호적작성의 원칙론이었다. 그러나 ‘分居’할 경우에 별도로 호를 세울 것을 중용한다는 점이 종전과 다른 분위기이다.

그런데 구래의 호구편성 관례로 본다면, ‘호구조사규칙’의 언급은 실제의 인구를 모두 호적에 등재하라는 말이 아니라 ‘호적대장에 오를 수 있을 만한 자들에 대해 호를 구성하여 호적에 등재치 않거나, 호적에 올리더라도 호당구수를 맞출 수 있는 적정선의 인구구성을 하지 않는 행위’ 이상으로 이해되지 않았다. ‘호구조사세칙’의 분호 규정은 1870~80년대에 경험한 바와 같이 호당구수를 줄이는 데에 역할을 하였다. 더구나 이러한 과정에서 제주지역과 달리 호구수가 모두 줄어드는 현상이 각지의 호구파악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었다.

지방관청은 중앙으로부터 새로운 규정이 적용될 때에는 항상 낮은 수준에서 재원의 양을 책정해두는 것이 현명한 일임을 오랜 경험을 통하여 익혀왔다. 또한 갑오개혁 이후, 지방재정을 중앙으로 일원화하려는 시도에 대해 지방사회는 갈등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 갈등은 무엇보다도 중앙재무기관이 토지와 호구를 일률적으로 파악하고 結戶錢으로 수취를 일원화하는 재원의 중앙집권화에 있었다. 특히 호구는 읍재정 운영을 위하여 부과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재원이었으나, 이제 중앙재무기관으로 이관해야 할 상납재원에 지나지 않았으며, 호수의 증가는 바로 호세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었다.

1897년 당시 예안지역의 호구파악은 지방사회의 자치조직인 鄉會가 주도하고 있었다. 1896년 가을에 시작된 새로운 호구조사가 이듬해에도 지속되었는데, 새로운 호구파악과 함께 호구에 대한 과세문제가 동시에 거론되고 있었

원년 9월1일), 戶口調查細則은 그해 9월3일에 반포되었다(『官報』, 건양원년 9월8일).

34) 『官報』, 광무 10년 9월 28 일

다. 李晚燾는 『鄕山日記』에서 1897년 6월4일조에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향회에서 듣건대 호전을 배분하는 것이 많으면 매호마다 9량이나 된다 하니 도대체 무슨 명목인지 모르겠다. 새로운 법이라고 말하면서 백성을 부리는 것이 이와 같으니 술렁이는 민심을 어찌하려나.³⁵⁾

그러나 호전 책정에 대한 우려는 그해 9월8일의 향회에서 조금 완화된 듯하다. 즉, 새로운 호구조사에 따라 파악된 신호가 1100 여호에 이르는데 호전 배분은 구래의 호구수인 402호로 시행하여 일년에 매호 9량식만 내면되는 것으로 결정이 났던 것이다.³⁶⁾

1897년의 호구조사로 파악된 신호가 모두 중앙으로 보고되지는 않은 듯하다.³⁷⁾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호수가 두 배 이상 증가하는 곳도 드문 일은 아니었던 것 같다. 제주지역은 이때에 이미 확보된 많은 구수를 현상유지하면 서구호적보다 두 배가 넘는 호수를 확보하였다. 제주도의 이러한 호수 진행은 타 지역과 다른 제주지역의 특성으로 말미암은 듯하다.

1987년 당시의 호구조사를 도별로 살펴보면 호당구수가 지역마다 다양함을 알 수 있다(<표 5>).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함경남북도와 한성부가 전국평균을 훨씬 웃도는 호당구수를 보이며 평안북도가 다소 많은 호당구수를 나타낸다는 점이다. 호당구수가 많다는 점은 1897년 직전까지의 제주지역에서도 볼 수 있었다. 물론 제주도는 1897년에 기왕의 구수를 유지한 채로 호수가 급증하여 호당구수가 전국규모의 호당구수로 떨어지지만, 여전히 호당구수가 많은 지역이 있었다. 호수에 비해 구수가 많이 확보되었던 이러한 지역의 공통된

35) “聞鄉會，每戶排錢，多至九兩，未知何名色也，以謂新法，欲以使民者，又如是，嗷嗷民情，奈何。”(李晚燾，『鄕山日記』，1897년 6월 4일조，국사편찬위원회 1985 영인.)

36) “鄉會，新戶一千一百餘戶，以舊戶四百二戶施行，每戶九兩式，一年應納耳。”(李晚燾，『鄕山日記』，1897년 9월 8일조.)

37) 조석곤은 순창의 사례를 들어 광무시기 호포전 납입시의 호구수는 구호적(특히 18세기 중엽)에 기초하고 있으며, 중앙에서 설정한 호수는 실제 지방에서 파악한 호수와 다름을 지적하였다(조석곤, 「광무년간의 호정운영체계에 관한 소고」,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1990, 161~162면).

〈표 5〉 1897년과 1899년의 전국 도별 호구수 및 증감율 (단위 호 명)

지명	1897년			1899년			증감율	
	호수(A)	구수(a)	a/A	호수(B)	구수(b)	b/B	호수	구수
漢城府 署	45,350	219,815	4.8	44,329	205,906	4.6	-2.3%	-6.3%
京畿	167,230	644,230	3.9	168,415	654,749	3.9	0.7%	1.6%
忠淸北道	72,313	269,702	3.7	73,517	272,473	3.7	1.7%	1.0%
忠淸南道	114,793	386,927	3.4	116,996	396,846	3.4	1.9%	2.6%
全羅北道	97,815	340,122	3.5	98,164	341,668	3.5	0.4%	0.5%
全羅南道	104,918	36,6090	3.5	111,187	395,867	3.6	6.0%	8.1%
慶尙北道	149,950	549,813	3.7	152,998	579,353	3.8	2.0%	5.4%
慶尙南道	126,970	461,032	3.6	128,545	466,966	3.6	1.2%	1.3%
黃海道	93,550	335,515	3.6	93,225	342,123	3.7	-0.3%	2.0%
平安南道	96,406	367,241	3.8	98,832	372,899	3.8	2.5%	1.5%
平安北道	86,888	357,192	4.1	90,858	370,138	4.1	4.6%	3.6%
江原道	75,853	254,100	3.3	77,388	260,861	3.4	2.0%	2.7%
咸鏡南道	59,074	385,452	6.5	59,298	412,993	7.0	0.4%	7.1%
咸鏡北道	41,187	250,797	6.1	43,772	268,059	6.1	6.3%	6.9%
總計	133,2501	5,198,248	3.9	1,357,037	5,340,901	3.9	1.8%	2.7%

* 출전: 1897년은 독립신문 광무원년 12월16일자, 1899년은 독립신문 5월16일자.

특징은 무엇인가? 이들 지역은 바로 부세 가운데 토지세의 비중이 적은 지역이었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토지세를 징수하기 어려운 대신에 호구에 대한 수취가 발달된 지역이었다. 특히 환곡운영이나 군역면제에 대응한 수취 등이 호수와 구수의 확보에 기초하여 시행되었다.³⁸⁾ 또한 호구에 대한 이러한 과세에는 호적과 統記가 이용되었다. 그런데 '饒戶錢'을 수취함에 있어 호마다 부담 액수가 일정

38) 허원영, 「19세기 제주지역의 호구기록과 부세제도 — 제주 대정현 사계리 호적중초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사학회 동아시아학술원 공동주최 '조선후기 인구와 가족의 이해' 학술회의 발표문, 2004년 12월1일

했던 단성의 경우와는 달리,³⁹⁾ 제주도는 호마다 구수의 크기에 따라 차등을 두는 호등제로 부세운영이 실시되기도 했다.⁴⁰⁾ 제주도에 호등제가 실시된 기록은 구수를 이전의 두 배로 확보해 가는 19세기 중엽까지 나타나며 두 배의 구수가 고정되는 그 이후로는 호등의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제주도에서는 호구수취를 위하여 호등제와 구총의 확보라는 호구과약 방법을 구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한 더 구체적인 천착이 필요하나 여기서는 호구과약 방법이 지역에 따라 시기에 따라 다양하였다는 점, 그리고 그것은 중앙정부에 의한 일원적 호구 과약과는 별도로 지방에서 주도하는 호구운영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점만을 확인해 둔다.

그런데 1897년에 제주지역은 호수의 고정적 유지와 구수 과약의 강화에 근거한 기존의 호구과약으로부터 일거에 호수의 증가를 가져왔다. 이것은 호로 일원화된 중앙정부의 호세 수취에 대응하여 호구과약을 호수의 과약으로 일원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주지역은 이미 19세기 초에 비해 두 배 이상의 구수를 확보한 상태여서 호당 구수를 전국의 평균적 수치에 맞추어 호구를 편성하여도 호수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1897년 이후 제주지역은 이렇게 증가된 호수 수준에 기초하여 1905년에 이르기까지 호수가 점감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1897년에 급락한 전국의 호구수가 1905년에 이르기까지 회복하지 못하는 추세에 부응한 현상이었다.⁴¹⁾ 그러나 이 광무시기의 호구과약 현상도 전국이 일률적이지는 않았다.

1897년으로부터 2년 뒤인 1899년의 호구조사에서 도별 호구수의 증감율을 계산해보면, 한성부에서는 호구수가 모두 감소하였으나 함경도와 평안북도는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호구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증가는 도내 여러 지역의 종합적 결과이고 지역마다 또 다른 현상이 전개되었다. 1898년

39) 김건태, 「조선후기 호의 구조와 호정운영 — 단성호적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40, 2002.

40) 허원영, 앞의 글

41) 전국 호구총수의 호당구수가 3.9명으로 저하되었다가 1900년대에 들어 다시 4.1명으로 회복되는 데에 맞추어 덕수리의 호당구수는 3.1로 저하되었다가 이후 1900년대 전반기를 통해 4.0까지 회복되어 갔다

평안북도의 보고에 의하면 도내 21군 가운데 6군은 호구가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⁴²⁾ 중앙정부는 이러한 호구감소가 여러 해 거듭되면 그 지역 수령에게 벌금을 물리고 수령을 그만둔 뒤에도 추징하는 등 호구증가를 위한 노력을 지속시켰다.⁴³⁾

그러나 같은 해에 함경남도의 삼수와 갑산은 호구수가 점차 늘고 있으나 궁박하여 구휼을 해야 하는 지역이므로 이전의 호구수대로 응역하도록 하였다. 갑산은 郡籍 戶元額이 3947호이나 호역 응역호는 전대로 2000호로 하고, 삼수는 1119호이나 응역호는 전대로 700호로 시행함을 보고하였다.⁴⁴⁾ 이런 보고는 다음해에도 그대로 시행되어 1905년까지 똑같은 형태로 지속되었다.⁴⁵⁾

한편, 1899년 당시 전국 도별 호구수를 보도하는 『독립신문』은 “한국이 이천만 동포라고 하는데 조사된 호구수는 천오백만 가까이 부족하니 인구가 이렇게 과다히 부족한 이유는 지방관들의 직무태만”이라고 비난하고 있다.⁴⁶⁾ 또한 같은 해 7월 17일자 독립신문 사설에서는 ‘급선무라는題下의社說’에서 호수가 3,480,900이며 인구가 천육백만이라는 外國人의 조사를 인용하였다.⁴⁷⁾ 이 수치는 1906년 이후에 급증하여 1909년의 민적법 시행 이후 더욱 증가한 1910년대의 호구수보다 많은 수치이다

이러한 호구 수치가 현실에 가깝다면, 대한제국기의 호구정책이 ‘實戶實口’의 호구조사를 지향했는지조차 의심스럽다. 전국의 호구파악이 기존의 호

42) 『外各府郡公牒摘要』奎18022, 내부 판적국 편, 平安北道, 光武二年 七月 十五日.

43) 『外各府郡公牒摘要』奎18022, 내부 판적국 편, 平安北道 報告三十號, 光武四年 五月五日.

44) “甲山郡籍戶元數가 雖爲三千九百四十七戶이오나 應役則以在前二千戶로 施行호고 三水郡籍戶元數가 雖爲二千一百十九戶이오나 應役則以在前七百戶로 施行……”(外各府郡公牒摘要 奎18022, 내부 판적국 편, 咸鏡南道 報告三十七號 光武二年 七月 三十日).

45) 『外各府郡公牒摘要』奎18022, 내부 판적국 편, 咸鏡南道 報告七十二號, 光武三年 八月三日; 報告二十四號 光武九年 七月 三日.

46) 『독립신문』, 1899년 5월6일자

47) 『독립신문』, 1899년 7월7일자

구편제 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 '실호실구'의 호구조사를 실현하기 시작하는 것은 1906년 이후의 일이다. 그러나 한 가지 지적해 두어야 할 것은 이 이후 민적법에 의한 호구조사가 시행되는 1909년까지의 3년 사이에 전국적인 호구수의 급증을 이루어내었다는 사실이다. 이후 1910년대까지 민적부의 호구과약은 1909년 수준으로부터 그다지 진전되지 못했다.

전국적 호구수의 급증은 지방에서 파악되고 중앙정부로 보고된 호구수가 급증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이미 지방차원에서는 호구과약이 상당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1904년, 1905년의 단성지역에서는 중앙정부에 호구총수로서 보고되는 것과는 별도로 호구가 파악되고 있었다. 또한 제주지역은 이미 19세기 중엽에 1800년대의 두 배로 구수를 파악하고 있었다. 이것은 전국의 호구수가 1800년대에 비해 두 배가 되는 1909년 단계의 수준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지방재정 운영상의 필요에 의해, 그리고 지역사회 내부의 조정을 위하여 지방차원의 호구과약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제주지역의 경우는 이것이 호적에 표면화되었을 뿐이다. 단지, 지역의 모든 인구가 공식문서로 파악된 것은 아니다. 남녀인구연령분포도 등에서 보듯이 기록에서 누락된 인구들이 여전히 존재했다.

Ⅳ. 맺음말 — 대한제국기 호구정책의 성격

광무호적의 기재양식이 구호적과 다른 특징은 첫째로 호의 대표자인 호주에게만 四祖가 기재되고 구성원 개개인의 등재는 동거하는 친족에 한정된다는 것, 둘째로 호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직역이 사라지고 대신에 호주에게만 '士' '農' 등의 직업구분이 기재된다는 것 셋째로 호 구성원의 남녀총계뿐 아니라 瓦家·草家 등, '家宅' 칸수가 기재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지역단위의 호구총수에 맞추어 호구를 편제하며 호와 호의 대표자인 주호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던 기존의 호적과는 달리, 생활공동체로서의 세대단위로 호를 구성하고 호주 개인에게 호에 대한 법적 권리와 의무가 주어짐을 의미한다.

조선왕조는 토지에 대해서는 '결부'로, 인구에 대해서는 '호구'로 재원을 파악하였는데, 파악 단위에 있어 공통적인 원칙이 있었다. 결부는 토지의 절대면적이 아니라 비옥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고 면적을 달리하는 소위 생산력단위이다. 토지세는 생산력에 근거하여 수취되므로 결부의 수치가 바로 수취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호구는 실재하는 가계경영조직의 단위라 아니라 어느 정도의 경제적 능력에 맞추어 편제한 역수취 단위이다. 따라서 호구에 대한 수취는 호구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매호, 매구 얼마의 균등한 부과가 가능했다. 호구수는 바로 수취량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호구의 경제능력에 따라 호구마다 징수량을 달리하는 것과는 판이한 사고방식이다.

광무호적에는 '실호실구의 파악을 현실화하고 호주의 각기 다른 경제능력을 파악함으로써 이러한 기존의 원칙을 공식적으로 부정하였다. 그러나 광무시기 호구파악은 모든 세대를 파악하지도 않고 경제능력이 상위인 호들만을 파악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기존의 호구파악을 계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방에서 조사되는 호와 중앙정부에 보고하는 호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았다. 기존의 호구파악에서는 지역에 따라 호마다 차등을 두고 지방차원에서 호구에 대한 과세를 조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광무호적은 이러한 지방차원의 호구파악을 중앙정부가 일원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광무시기의 호구파악 현실은 여전히 이원적인 운영에 기초하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호를 편제하는 현실적인 방법과 그것을 조정하는 주체가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했다. 원칙적으로 호구파악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이 호구파악에서 호구수취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수행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지역사회의 자치적 활동에 호구파악 과정의 수행을 맡기고 있었다. 대한제국기의 호구조사는 구래의 호구정책에 대한 평가와 근대적 운영방법의 모색이 그 성공여부를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갑오개혁이 진행되고 있던 1895년 10월에 內部大臣 兪吉濬은 內閣總理大臣 金弘集에게 '鄉約規程 及 鄉會條規 請議書'를 제출하였다. 여기서 그는 향회를 里 단위의 자치조직으로 구성하여 스스로 호구와 산업을 조사토록 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 세목은 첫째, 종래에 정액화된 원호수가 얼마이던지 간에 실제의 수치로서 호를 파악할 것, 둘째로 인구는 고용 및 기구 한 사람이

라도 놓치지 말 것, 셋째로 지방관청의 공역은 각 면의 호수에 준하여 동원하고 면의 공역은 각 里의 호수에 준하여, 동리의 역은 각호의 장정 수에 준할 것 등이었다. 또한 이러한 호구조사는 해당 지역의 가옥·우마·물산 등의 산업에 대한 조사를 병행토록 했다.⁴⁸⁾

1896년에 공포된 호구조사세칙은 실호실구를 조사한다는 목적에 있어 유길준의 제안과 같았다고 할 수 있으나 호구조사의 주체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었다. 호구조사를 향회가 주관하여 里단위에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서 제공하는 양식을 호주 본인이 직접 작성하며 면·리·통의 행정조직을 통해서 지방관청에 이르게 하는 방식인 것이다. 그런데 후자는 중앙정부가 행정조직을 완비하고 호구조사를 위한 모든 비용을 제공할 수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었다.

갑오개혁은 중앙정부가 모든 재원을 일률적으로 파악하고 징수하여 일원적으로 배분하는 조선왕조의 재정이념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권적 토지와 무명잡세의 폐지, 결호전으로의 일원화, 조세의 금납화, 중앙재무기관의 설치와 지방관리의 파견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대한제국기의 호구정책은 조선왕조 통치이념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하는 갑오개혁의 의지를 계승하면서도 지방사회의 자율적 운영을 박탈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중앙집권적이면서도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선왕조의 이중적 재정시스템을 오로지 중앙으로 일원화된 재정시스템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과정에 광무시기의 호구파악이 존재했다고 할 수 있다. 중앙정부에 의한 '실호실구'의 파악은 광무시기의 이러한 갈등을 거쳐 통감부시기 이후에나 현실화될 조짐을 보였다.

투고일 : 2004. 12. 30 심사완료일 : 2005. 2. 25

48) 『內部請議書』 2, 奎17721, 二百五號 請議書, 開國五百四年 十月 十六日.

• 참고문헌

- 「慶尙南道丹城郡戶籍表」, 「丹城郡元堂面家舍表」, 「慶尙南道丹城郡家戶案單」(『경상도단성현사회자료집』 2, 성균관대 대동문화연구원, 2003).
- 『陝川李氏族譜』(배산서원 간. 1926,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 『경상도단성현호적대장』(원당면호적중초, 1825년; 1828년; 1864년 각면의 19세기 호적중초).
- 『濟州大靜縣德修里戶籍中草』(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1993).
- 『鄕山日記』(李晚燾 지, 국사편찬위원회, 1985영인).
- 『承政院日記』; 『日省錄』; 『高宗實錄』; 『官報』; 『內部請議書』 2(奎17721); 『外各府郡公牒摘要』(奎18022, 내부 판적국 판; 『독립신문』
- 조석곤, 「광무년간의 호정운영체계에 관한 소고」, 『대한제국기의 토지제도』, 민음사, 1990.
- 이세영, 「대한제국기의 호구변동과 계급구조」, 『역사와 현실』 7, 한국역사연구회, 1992.
- 李英美, 「韓國近代戶籍關聯法規の制定及び改正過程 — 民籍法を中心に」 『東洋文化研究』 6, 日本學習院大學東洋文化研究所, 2004.
- 정진영, 「조선후기 호적 호의 편제와 성격」, 『대동문화연구』 40, 2002.
- _____, 「조선후기 호적 ‘호’의 새로운 이해와 그 전망」, 『대동문화연구』 42, 2003.
- 김건태, 「조선후기 호의 구조와 호정운영」, 『대동문화연구』 40, 2002.
- _____, 「호구출입을 통해본 18세기 호적대장의 편제방식」, 『대동문화연구』 42, 2003.
- _____, 「조선후기 호적대장의 인구기재 양상」, 『역사와 현실』 45, 2002.
- 김재호, 「갑오개혁이후 근대적 재정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7.
- 김태웅, 「개항전후~ 대한제국기의 지방재정개혁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97.
- 손병규, 「호적대장 직역란의 균역 기재와 도이상의 통계」, 『대동문화연구』 39, 2001.
- _____, 「호적대장의 직역기재 양상과 의미」, 『역사와 현실』 40, 2001.
- _____, 「인구사적 측면에서 본 호적과 족보의 자료적 성격 — 17~19세기

- 경상도 단성현의 호적대장과 합천이씨가의 족보』, 『대동문화연구』 46, 2004.
- _____, 「대한제국의 재정, 그 이념적 굴절에 대하여」, 『새로운 질서를 향한 제국 질서의 해체 — 역사』, 청어람미디어, 2004.
 - 허원영, 「19세기 제주지역의 호구기록과 부세제도 — 제주 대정현 사계리 호적중초 분석을 중심으로」, 경제사학회 동아시아학술원 공동주최 조선 후기 인구와 가족의 이해 학술회의 발표문, 2004년 12월11일.



The census policy of the Daehan Empire period — The case of Baeyang-ri in Danseong and Sudeok-ri in Jeju

Son, Byeong-gyu

In 1896, right before the Daehan Empire was established, a new way of census taking was announced publicly to simplify all sorts of taxes into the land tax and the house tax. Though this policy aimed at finding property liable for the house tax as much as possible, the nationwide number of houses did not increase before the Japanese Residency-General period.

The way of census taking of 1896 was different from the former frame of family register. Besides it was presented under an idea different from the former census policy. The former family register was based on the financial idea that the number of houses fixed by a district unit says the total tax of the district for houses.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former family register is a result of adjusting record and omission of houses to the number of houses, populations, and the number of legislated occupations per region. On the contrary, the so-called 'the family register in Kwangmu' denied the former frame of family register officially by checking financial power of each family separately, on the assumption that it checked every actual family and house.

Nevertheless census taking in Kwangmu period neither check every household nor check only a well-off household. This can be said to succeed to existing way of census taking. The number of houses checked by a local government did not always accord with the number of houses reported to the central government. So, to correspond to imposing the house tax, it needed to check house and family separately or adjust the number of houses per region. Simply it needed a actual way to take a census and a reasonable

main body to check houses and families. As a general rule, it should be the central government to take a census and lay a tax to families or houses. But actually there was no choice to get a local government to take a census as before.

Gabo-reformation aimed at centralization of finance; that is to say, the central government should check financial resources, collect taxes, and distribute them among regions on a national scale. This was the financial idea the Choson dynasty had aimed at. The Choson dynasty, however, secured local self-regulation for local finance to some degree and merely controlled financial balance between the center and a region or among regions. The census policy of the Daehan Empire period succeeded to intention of Gabo-reformation, but became to deprived the local government of self-management little by little. The trouble of the census policy arose from this situation.



Key Words : the Daehan Empire period, the census policy, the family register in Kwangmu, the house tax, the financial idea